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3. 6.(수) 06:00 < 3.6.(수) 석간 > 배포 2024. 3. 5.(화)

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

-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정(최대 4개월 단축, '25.1.1.부터)
- 특별한 상황에서 무역위원회가 직권조사 가능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 무역위원회는 3.6.(수) 10:30, 무역협회(51층 대회의실)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.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철강, 섬유,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다. 무역위원회는 금번 관세법 개정('23.12.31. 공포)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.

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❶금번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,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였다. ❷또한,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, 관세청,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하였다. ❸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하였고,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하였으며, 기존 조사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. ❹향후에도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다.

금번 개정된 관세법은 '25.1.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, 무역위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「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·조사·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」과 조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무역조사실 덤핑조사과	책임자	과 장	이원희 (044-203-5870)
		담당자	사무관	한정선 (044-203-587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**우회덤핑방지제도 주요 내용 기업 설명회 개요**

□ 배경

○ **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도입**에 따른 **관세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**을 **기업들에게 설명**하기 위함

□ 행사 개요

○ **일시**: '24.3.6.(수), 10:30~12:00

○ **장소**: **서울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**(서울 삼성동)

○ **참석자**

- **(무역위)** **이재민 무역위 위원장(모두발언)**, 천영길 상임위원, 무역위원회 위원 등 **무역위 관계자 10여 명**
- **(단체)** 동국제강, 무림그룹, 세아홀딩스, 포스코, 한국제지, 현대제철, LX글라스, 섬유산업연합회, 전기산업진흥회, 제지연합회, 철강협회, 판유리협회 등 **기업 및 업종별 단체 50여명**
- **(학회)** 김대원 교수(서울시립대/무역구제학회장)
- **(로펌)** 법무법인 세종, 김·장 법률사무소, 법무법인 화우, 법무법인 광장 등 **10여 명**

□ 행사순서

시 간	진행내용	비 고
10:30~10:35 ('05)	모두발언	이재민 무역위 위원장
10:35~10:55 ('20)	발표 1: 우회덤핑 방지제도 법 및 시행령 세부내용 설명	이원희 덤핑조사과장
10:55~11:15 ('20)	발표 2: 우회덤핑 신청 시 안내사항	윤영원 변호사 (법무법인 세종)
11:15~12:00 ('45)	질의응답 및 토론	참석자

참고2 **반덤핑 조사(원심)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도 비교**

